

# 『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  
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 
보건복지부 행정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 
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  
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「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제 7조 제2항 제2호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 중 간호사의 실무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